

수원지방법원 2020. 12. 17 선고 2020나7619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20. 11. 19.

판결 선고 2020. 12. 17.

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6. 23. 선고 2019가소117013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,58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8. 11.부터 2019. 8. 28.까지는 연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기초사실

① 원고는 원고의 형인 C 소유이던 시흥시 D 전 2,684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위에 2010. 9.경부터 2012. 말경까지 별지 목록 [제시외 물건] 기재와 같은 가건물등(이하 '이 사건 가건물'이라 한다)을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던 사실, 2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(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)에서 F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(이 사건 가건물은 경매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), F은 2015. 1. 31.경 G과 이 사건 토지와 G 소유의 타 토지의 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, 3 위 교환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 가건물의 소유자로서 참여하였고, 같은 날 G에게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, 4 그러나 이후 위 교환계약은 이행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고(위 교환계약에 따른 권리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), 원고 또한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권을 G에게 넘겨주지 않은 채 계속 사용·수익한 사실, 5 이후 F은 2015. 4. 8.경 이 사건 토지를 H에 게 매도하였고, H은 I 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등을 부탁하였는데, 위 I 과 원고는 이 사건 가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얻는 수익금을 50:50으로 나누어 가진 사실, 6 한편,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차 임의경매절차(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J)가 개시되었는데,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8. 8. 28.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, 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건물은 제시외 물건으로 분류되어 그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된 사실, 8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가건물을 임의로 타에 임대하였고, 2018. 9.부터 2019. 7.까지 그 임대료로 합계 3,168만 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13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

2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(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가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얻은 수익 중 원고가 구하는 1,584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(갑 제12호증 각 내용증명)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. 8. 1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(지급명령 정본) 송달일인 2019. 8. 28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

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'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'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.

(2) 피고는, 위 G에게 원고가 작성하여 준 양도각서를 근거로 위 인정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F와 G사이의 교환계약은 결국 이행되지 않아 무산되었고,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권을 G에게 넘기지 않은 채 소유권자로서 계속 이를 사용·수익해 왔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양경승, 판사 인형준, 판사 강경묵

[제 시 외 물 건]

제시외(1-1):컨테이너 약18㎡
제시외(1-2):컨테이너 약18㎡
제시외(1-3):철골조샌드위치판넬지붕 작업장 약25.2㎡
제시외(1-4):컨테이너 약18㎡
제시외(1-5):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작업장 약170㎡
제시외(1-6):컨테이너 약27㎡
제시외(1-7):컨테이너 약36㎡ (1,2층)
제시외(1-8):샌드위치판넬벽체 샌드위치판넬지붕 화장실 약6㎡
제시외(1-9):철골조샌드위치판넬지붕 작업장 약6㎡
제시외(1-10):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창고 약220㎡
제시외(1-11):샌드위치판넬벽체 샌드위치판넬지붕 약7.9㎡
제시외(1-12):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창고 약220㎡
제시외(1-13):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창고 약154㎡
제시외(1-14):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창고 약84㎡
제시외(1-15):샌드위치판넬벽체 샌드위치판넬지붕 약15.5㎡

